

에 대하여 本 委員會는 충분한 立證資料를 갖고 深度있는 質疑 答辯 등 신중한 審査를 한 바, 1976年 7月 策定 施行되었던 手數料를 年間 消費者物價指數 類似業務 關聯 手數料 平均值 및 사사오입과 절사 등 3段階 算出方法에 依據하여 적정하게 算出하여 調整하였고 그 立案 節次上으로도 瑕疵가 없으므로 妥當한 條例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2年 11月 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를 改正 施行한 후 使用料를 調整하지 않아 類似施設의 使用料와 차이가 현저히 있으므로 이를 段階的으로 引上 調整하고 其他 死文化된 일부 條項을 현실에 맞게 전면 改正하여 運營의 合理化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は 基本施設 使用料를 9.5% 引上하고 附屬施設 및 其他施設 使用料를 10% 引上하여 新規 設置한 公演裝備 및 비디오攝影과 冷暖房 使用에 대한 使用料 徵收根據를 新設하는 것입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深度있는 質疑 答辯 등 신중한 審査를 한 結果 世宗文化會館 使用手數料가 類似團體에 비하여 현저히 低廉하므로 物價政策을 감안하여 段階的으로 引上하는 것으로써 改正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기타 條例案 內容에 대해서는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書面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當委員會가 審査報告한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를 期待하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瓌會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音盤및비디오物販賣·貸與業者登錄等에 관한手數料徵收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

布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록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신청 : 2,000원
2.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1,000원
3. 영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 1,000원

제3조(납부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음반판매업자등록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參 照)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p>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자체공연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어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시설 : 대강당 · 소강당 · 대회의장 · 소회의장 및 전시장 2. 부속설비 : 피아노 · 파이프오르간 · 동시통역시설 · 조명시설 · 무대시설 · 의상대 · 소도구 · 음향시설 · 영사기촬영 · 이동스크린 · 중계방송 및 냉난방 등 <p>제3조(사용승인) 회관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장(이하 “회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p> <p>제4조(대관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관내에 대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사용시간) ①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전 07: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2:30부터 17:30까지 3.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p>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사용료등) ①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p> <p>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입장권의 발행) ①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내에서 회관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한다.</p> <p>②입장권을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회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입장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사용자가 발행한 입장권은 회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p> <p>제8조(입장권의 매표 · 수표관리) ①영화상영을 위한 대관 및 회관자체 공연에 대한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입장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영화이외의 대관공연의 경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회관에 판매 위탁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이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 매표수수료는 입장권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p> <p>④대관공연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귀빈석(로얄석)을 제외한 좌석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좌석의 검인 및 매표를 공연 1일 전까지 유예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료 특례) ①회관장은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대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 수수료 및 문예진흥기금을</p>
--	--

<p>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p> <p>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회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30일전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 회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p>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정치, 집회와 행사 4.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때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회관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 	<p>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p>제11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회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p> <p>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회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p> <p>제13조(입장제한)회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회관장이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부 칙		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되었거나 사용 신청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일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 표)				
<u>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u>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료 (기준액)	비 고	
강 당	대강당	공연	203원	1. 좌석당 1회 단가임. 2. 오전은 기준액의 100분의 55, 오후는 기준액의 100분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함.
	소강당	공연	241원	4.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5. 익일의 공연을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대강당	행사	285원	1. 좌석당 1회 단가임.(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
	소강당	행사	526원	2. 익일의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회 의 장	대 회의장	행사	111원	1. 평방미터당 단가임(평당366원기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 2. 오전 및 오후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소 회의장	행사	164원	1. 평방미터당 단가임(평당 541원기준) 2. 오전 및 오후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전 시 장	전시	275원	1일 평방미터당 단가임(평당907원 기준)	
※초과사용료 가산(계속사용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이상 60분 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				

2. 부속설비 사용료
가 부속설비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기본표)	비 고
피 아 노	대형	1회 33,000원	1. 오전오후야간 대관중 1회 사용료임. 2. 동시통역시설 사용시는 수신기 1대당 500원씩을 별도 징수함. 3. 동시통역시설(수신기 포함)을 1일 2회 이상 사용승인시는 1회 초과분에 대하여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할인함. (사전승인 없이 초과 사용시는 기본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4. 파이프오르간 1회는 연습(2회) 포함.
	중형	1회 11,000원	
	소형	1회 5,500원	
파 이 프 오 르 간	1회	220,000원	
동 시 통 역 시 설	대강당	식 220,000원	
	소강당	식 110,000원	
	대 회의장	식 220,000원	
	소 회의장	식 110,000원	

나. 기타시설				03	
사용목적 및 이용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 고
촬영	대강당영화		4시간	110,000	1.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영화촬영의 경우 단위시간 초과 1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20으로 함. 3. 무료입장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의 조명 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5. 할부제 적용시는 제외함.
	소강당영화		4시간	55,000	
	대·소회의장 영화		4시간	55,000	
	대강당 VTR		1회	30,000	
	소강당 VTR		1회	20,000	
	대·소회의장·전시장 VTR		1회	20,000	
무대 조명	대 강 당		1시간	33,000	5. 할부제 적용시는 제외함.
	소 강 당		1시간	11,000	
무대	오케스트라 비트		1회공연당	22,000	4.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회전무대		1회	22,000	
	슬라이딩무대		1회	22,000	
음향	음향 반사판	대 강 당	1회	22,000	5. 할부제 적용시는 제외함.
		소 강 당	1회	11,000	
	녹음		1회	11,000	
영사기	70m/m		1회	33,000	1. 사용기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사용료=사용연료×연료요금×0.4)
	35m/m		1회	22,000	
	19m/m		1회	11,000	
이동스크린			1회	30,000	
중계방송			1회	110,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냉난방	냉 방		1시간	연료시가에 따라결정	1. 사용기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사용료=사용연료×연료요금×0.4)
	난 방		1시간		